

강원도립대학교 학생 생활관 수칙

(제정) 1998-06-19

(개정) 2000-10-19

(개정) 2006-06-05

(개정) 2007-10-10

(개정) 2009-07-22

(개정) 2010-05-03

(개정) 2011-05-17

(개정) 2016-04-25

제1조(목적) 본 수칙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이 입사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 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5.3.> <개정 2016.4.25>

제2조(호실배정) 각 호실 배정은 생활관장이 결정하며 일단 배정된 방은 임의변경 할 수 없다.

제3조(외부인의 출입 제한) 학생은 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생활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. 단, 부모의 경우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안내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3>

제4조(일과시간) 학생은 다음의 일과표에 의하여 생활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단, 계절 및 학사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1. 식사시간 : 조식 07:30~09:00
중식 11:30~13:30
석식 17:30~19:30 (동절기 17:30~18:30)
2. 점호 : 23:00
3. 개문 : 06:00
4. 폐문 : 23:00

제5조(식사카드) 학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식사 시에는 식사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.
2. 식사는 식당에서만 실시한다. 단, 환자의 식사는 관장의 승인 하에 호실내로 운반할 수 있다.
3.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.
4. 식당 출입 시는 예의 바른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.

제6조(광고 및 게시물) ① 생활관내에 광고물 및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5.3>

② 학생은 광고 및 게시물을 항상 주시해야 하며, 일체의 광고물은 48시간 경과 후면 주시된 것으로 간주한다.

③ 광고 게시는 게시판에 부착된 것만 유효하며, 환경 미화 상 게시판 외에 게시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철거한다.

제7조(외출) 학생의 외출은 점호 시간까지만 허락 되며 학생이 외출 후 점호시간까지 귀사하지 못한 학생은 귀사 즉시 관장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만일, 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

무단외박으로 간주 한다.

제8조① 외박 시에는 외박신청서에 기재하여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귀사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.<개정2016.4.25.>

② 외박신청서를 당일 22: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2016.4.25.>

제9조(무단 외박자 징계) 관장의 허락 없이 무단외박을 하였을 때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수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. 또한 외박을 하고 약속 기일 내에 귀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. <개정 2010.5.3>

제10조(청소) 공용부분을 제외한 각 호실의 청소는 학생의 의무로 한다.

제11조(변상) 학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3>

제12조(비품사용) 각 방의 비품이 사용 불능 시는 관장에게 보고한 후 교환 할 수 있으며 분실시는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3조(우편물 및 통신) ① 삭제<개정2016.4.25.>

② 삭제<개정2016.4.25.>

③ 우편물의 수취는 우편함을 이용하며, 필요한 경우는 직접 서명 후 수령한다.

④ 인터넷의 사용은 타인에게 방해가 될 경우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3>

제14조(생활관내 집회) 생활관내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, 개최일시, 장소,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5.3>

제15조(전열기 사용) 전열기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다리미와 미용기구 등
2. 실내의 조명 스탠드(30W이내) 및 방송 수신 기류
3. 다음과 같은 전열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압수한다.

가. 전열담요

나. 커피포트

다. 전기밥솥

라. 기타 60W이상 전기기구 등 (냉장고, TV)

제16조(벌칙) 학생이 수칙을 불이행할 시에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.

1. 차 기년 생활관 선발 누락 :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
2. 퇴사처분
가. 수칙 상 벌점10점 이상인 자
나. 생활관 규정 제11조의 퇴사 처분에 해당되는 자
3. 벌점누적 : 생활관 생활 중 부과된 벌점은 졸업 시 까지 유효하다.

제17조(관비납부) 학생은 정한 기간 내에 관리비 및 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고지된 기간 내에 관장의 특별한 승인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5.3>
2. 관장의 허락을 득한 1회 5일 이상 장기 외박자와 학교에서 실시하는 1회 5일 이상의 공식적인 행사로 인한 외박의 식비는 그 기간에 대한 식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.

〈개정 2010.5.3〉〈개정 2011.5.17〉

3. 중간입사, 중간퇴사인 경우의 납부금 산정 및 환불은 별표1과 같다. 〈신설 2011.5.17〉
 <표1> 납부금 산정 및 환불기준 〈신설 2011.5.17〉

중간입사			중간퇴사		
구분	기준	납부금	구분	기준	환불금
관리비	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	100%	관리비	학기 시작 전	100%
	학기 시작 후 1개월 이후	80%		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	50%
식 비	일 별 계 산		식 비	일 별 계 산	

제18조(벌점기준) 벌점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.

항	위 반 사 항	벌 점
1	화재 (방화, 실화)를 일으킨 자	퇴사
2	절도 행위자	퇴사
3	창문으로 출입하는 자	퇴사
4	이성 동반 출입자	퇴사
5	폭력사건 사고자	퇴사
6	도박 및 음주 행위자	5점
7	만취 상태 입사자 (출입통제)	5점
8	열쇠를 무단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자	5점
9	외부인 동반 출입자	3점
10	무단 외박 자	2점
11	관장, 관장 보 및 직원, 학생 임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자	2점
12	전열기구 사용자 (TV, 냉장고, 전기담요, 커피포트, 전기밥솥, 가스레인지 등)	2점
13	시설물 손상, 파괴 행위자 (변상 및 벌점)	2점
14	고성방가 및 소음 (악기, 라디오)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	2점
15	식사 카드 대여	2점
16	점호 후 음식물 무단 반입	1점
17	실내 청소 불량	1점
18	지정된 구역이외에서 흡연 행위자	2점
19	실내등을 소등하지 아니한 자 (01 : 00이후)	1점

부 칙(1998. 6. 19)

제1조(시행일) 이 수칙은 1998년3월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0. 10. 19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6. 5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10. 10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7. 22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3)

이 개정 수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5. 17)

이 개정 수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수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